

백년포럼

2017 백년포럼 시즌 1_1st

개헌, 시민의회법, 시민의회의 제도화

2017년 3월 3일(금) 오후 2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김종민 의원실
(사)다른백년
추첨민회네트워크
청년정치포럼(준)

□

▶ ()

□

▶

□

▶

“ ”

□

▶ (2017)

▶ ()

▶ ()

▶ ()

▶ ()

인 사 말

‘시민의회의 개막을 위하여’

이래경 · (사)다른백년 이사장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입니다.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민본(民本)과 민생(民生)과 민락(民樂)을 위한方便(方便)이어야 하며, 민주주의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민본이라 함은 정치가 필요하고 나라가 있는 까닭이 백성 즉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옛 성현이 가르치시길, 백성을 위함이 없으면 재상을 쫓아내고 군주도 갈아치우고, 백성을 업신여기면 하늘도 갈아엎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생이라 함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가 사회경제적 흐름을 잘 운용하여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민지산(齊民之產)의 가르침입니다.

민락이라 함은 자연속에 탐스런 열매가 맺고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민본과 민생위에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삶을 향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열린 본뜻이 모든 생명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모든 시민들은 각자의 삶을 스스로 즐길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임무입니다. 조선왕조를 세운 정도전 선생의 외침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87년 민주화 이후 30년 간의 한국 정치는 완벽한 실패작입니다. 이러한 실패의 배경에는 과거부터 누적, 형성된 소수를 위한 기득권 중심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탓도 있고, 잘못된 현실을 은폐하려고 꾸며대는 관료와 지식인집단들의 곡학아세적 풍조와 이에 질세라 거짓말을 밥 먹듯 해온 언론환경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도 하지만, 지난 세월동안 야합으로 탄생한 정치 제도적 결함과 부족함이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결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현재 한국사회에는 명실상부한 정당정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력한 정당들이 선거철마다 간판과 정책적 내용을 달리하며 등장하는 현실이 이를 명백히 증거합니다. 현재의 정치판은 정치를 명색과 직업으로 아

는 정상배들의 사교장에 불과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민의가 왜곡되어 반영되는 현재의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의회 다수결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저 민주를 가장한 과두제로 기득권에 포섭당해 연출하는 극장식 정치일 뿐입니다.

자신이 황제인 듯 착각한 황당무계한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하여 쫓겨날 처지에 몰렸듯이, 공범이라 할 정치권도 이제 근본적인 자기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민의를 왜곡없이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정당정치가 명실상부한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선거법과 헌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법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게임의 룰을 제대로 정할 까닭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유력정당이 없는 한국의 정치판, 명색과 사적 이해관계에 몰입된 정상배들이 우글대는 현재의 의회에게 제대로 된 선거법과 헌법의 개정을 기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에 해당합니다.

비례성을 강화하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후안무치하게도 정당 간 야합을 통해 비례의석수를 거꾸로 줄였던 지난 총선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70년 간의 한국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반듯한 제헌헌법을 4.19혁명기를 빼고는 수차례에 걸쳐 누더기로 만들어온 과정입니다. 대부분 자신들의 정권장악에 대한 야욕으로 헌법을 개악하거나 야합해온 기록들입니다.

단연코 선거법과 헌법의 개정을 정치인들의 손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각계 각층의 시민적 요구를 왜곡없이 직접 담아낼 새로운 절차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심원제라는 경험을 기초로 직접 민주주의의 형식을 빌어 제안과 숙의와 토론과 합의라는 과정을 실현하는 시민의회라는 방안이 내용을 가다듬고 시민적 지지를 담아내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를 실현할 때까지 광장의 수백만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절절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정치인과 정치제도는 탄핵되고 퇴장돼야 마땅합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헌법개정절차법이 필요하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헌특위위원)

1. 국민참여개헌절차법 제안 취지 및 배경

87년 헌법 개정 이 후 30년만에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조기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개헌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대선 후보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헌 과정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기대가 큼니다. 이번 헌법 개정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정부 형태 논의만이 아니라 국민주권 확대, 기본권 신장, 지방분권 확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9차례의 헌법 개정 과정은 대부분 정치권이 주도했고 국민들이 참여할 기회는 막혀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진행된 헌법 개정 과정이 주로 권력자들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헌법 개정안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주권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따라서 헌법 결정권자인 국민이 헌법개정안 작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지극히 당연한 것 입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지난번과 같이 대다수의 국민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자문위원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소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만으로 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헌법에 국민 참여 절차로서 국민투표만을 명시되어 있다는데**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도도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헌

법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안이 없고 국회에서의 논의도 상설화되지 않은 임시 기구인 헌법개정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안정적인 개헌 논의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에도 현재의 개헌 특위는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논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 과정에서 관심있는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헌법 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들은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하여 교육, 공청, 토론, 의견 개진의 과정을 거쳐야 만이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헌법 개정 과정에 전문가와 함께 별개로 국민들의 보편적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만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 건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고민을 모아 저는 「국민참여에 의한 개헌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의 경우 현재 헌법 개정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몇 가지 절차를 간소화 시켰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특히 시민회의 관해서는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일랜드식 아이슬란드의 시민회의의 사례를 본따 만들긴 했지만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맞게 간소화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 국민참여개헌절차법의 세부 내용

먼저 「국민참여개헌절차법」의 기본 내용은 개헌 과정에서의 주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데 있습니다. 법안 제2장 5조 7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헌법개정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

이러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국민들은 헌법 개정에 대한 교육, 공청, 토론을 통해 헌법 개정에 대한 교육 및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직접 의견을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산하에 자문위원회와 시민회의의 두 가지 기구를 두어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문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기구로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하되 현재 개헌특위에 설치되어 있는 자문회의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으로 설계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표1>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표1>

1. 헌법개정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2. 헌법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또는 여론조사의 검토
3. 헌법개정안 기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4. 헌법개정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에 대한 의견서 제출
5. 그 밖에 헌법개정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와는 다르게 시민회의는 개헌 과정에서 도출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2백명에서 3백명의 인원으로 구성합니다.

특히 시민회의의 구성원은 성별, 나이, 지역에 비례하여 추첨으로 선발하는 형태로 설계하였습니다. 시민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헌법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형태와 기본권 문제, 지방분권 문제 등의 사안에 대해서 시민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론 조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토론을 진행한 뒤 관련 의견서를 개헌특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개헌특위는 자문위원회와 시민회의의 의견을 ‘존중’ 하여 헌법개정안의 기초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표2> 시민회의의 직무

1. 헌법개정안 기초안에 대한 회의 및 토론
2. 헌법개정안 기초안에 대한 자체 공론 조사
3. 헌법개정안 관련 홈페이지, 우편, 문서 등을 통해 제기된 국민 제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
4. 헌법개정안 기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처음 시민회의를 고민할 때에는 유럽의 사례처럼 자체 논의 구조를 갖고 상시회의 및 의결을 통한 방안 도입을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첨으로 선출된 시민들에게 어디까지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과의 권한 충돌 문제 등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토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유럽과 같이 직접 민주주의의 훈련을 거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험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법안은 시민회의 도입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만들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헌 논의 후 이 후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참여형 개헌 논의의 전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마치며

저는 이 법을 발의했지만 바로 통과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이견이 있고 그 외 정당의 반대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 과정에서 이 법안이 논의가 되는 것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훈련은 계속 이뤄져야 합니다.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시민 의회를 도입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시민의회에 대한 논의가 한국에서 촉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39
----------	------

발의연월일 : 2017. 2. 15.

발 의 자 : 김종민 · 정춘숙 · 백재현
원혜영 · 강창일 · 윤후덕
위성곤 · 우원식 · 김정우
신창현 · 최운열 · 강병원
의원(12인)

제안이유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헌법 개정 절차가 시작되었음. 하지만 현행 헌법에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참여 절차로서 오직 국민투표만이 명시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인 국민 참여 절차를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함. 또한 헌법 결정권자인 국민의 다수가 헌법 개정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헌법 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에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헌법 개정 절차에 참여하는 법률을 입안하여 국민들이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하여 헌법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헌법 개정 방향 및 내용에 대해 토론 및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회 과반수가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을 ‘헌법개정안’, 헌법개정의 안건을 위하여

작성한 안을 ‘헌법개정안 기초안’ 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역할의 필요성을 명시함(안 제4조).

다.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법률이 정하는 헌법개정절차를 위한 기구로 규정하고 이 기구로 하여금 ‘헌법개정안 기초안 작성’ 과 ‘국민 여론 수렴 절차’ 를 진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그 소속으로 자문위원회와 시민회의를 두어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및 대국민 교육활동을 하도록 함. 또한 이 기구의 의견서 및 보고서를 존중하여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마. 헌법개정안 기초안의 작성에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고 헌법 개정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의견수렴 또는 여론조사 검토, 헌법개정안 기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헌법개정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하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바. 헌법개정안 기초안의 작성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회의를 두고 헌법개정안 기초안에 대한 토론, 자체 공론 조사 및 헌법 개정안 관련 국민 제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 등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사. 시민회의 회원은 필요한 수의 회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되 성별, 연령, 지역이 균등하게 배분하여 선출함(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아. 시민회의 회원은 건강상의 사유 및 그밖에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임할 수 있다. 사임으로 생기는 결원에 대해서는 시민회의 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선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자. 시민회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함(안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

차. 헌법 제10장에 따라 헌법개정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하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안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

카.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함(안 제26조).

타. 헌법개정안이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함(안 제27조).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하고 헌법 개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이 개정안의 작성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의 절차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회의체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헌법개정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의 안건을 말한다.
2. “헌법개정안 작성”이란 헌법개정안 기초안의 작성·수정, 자료 수집·분류·발간·관리·분석 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헌법개정안 기초안”이란 헌법개정의 안건을 위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정이 있기 전의 안건을 말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개정안의 작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회의 의견 수렴)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2. 그 밖에 헌법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장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5조(헌법개정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 기초안 작성,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심사 및 헌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의결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는 분야별 심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헌법개정에 관련하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법개정에 관련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공청, 토론

2. 헌법개정에 관련된 각종 조사 활동

3. 헌법개정에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각급 단위 토론회에 대한 지원

4. 헌법개정에 관련된 국민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검토

⑤ 국가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헌법개정안 작성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제11조에 따른 헌법개정안 작성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개정시민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⑦ 위원회는 헌법개정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헌법개정안 기초안의 확정) ① 위원회는 의결로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확정(이하 “확정”이라 한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확정을 함에 있어서 자문위원회 및 시민회의가 제출한 의견서 및 보고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확정이 있는 뒤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국회 보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3장 자문위원회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헌법개정안 기초안의 작성에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헌법개정안 작성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의장, 정당 또는 시민단체 등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의 직무)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헌법개정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2. 헌법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또는 여론조사의 검토
3. 헌법개정안 기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4. 헌법개정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에 대한 의견서 제출
5. 그 밖에 헌법개정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자문위원회는 회의결과 및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시민회의

제11조(시민회의의 설치)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민 의견수렴의 결과를 반영하고 헌법개정안 기초안의 작성 과정에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헌법개정안 작성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개정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시민회의의 구성) ① 시민회의는 2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헌법개정안 작성을 위한 대한민국 시민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회원은 이 법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시민회의 의장은 위원 자체 회의를 통해 호선으로 정한다.
- ④ 시민회의 제반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회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13조(시민회의의 직무) ① 시민회의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헌법개정안 기초안에 대한 회의 및 토론
2. 헌법개정안 기초안에 대한 자체 공론 조사
3. 헌법개정안 관련 홈페이지, 우편, 문서 등을 통해 제기된 국민 제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
4. 헌법개정안 기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② 시민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관계 전문가 등에 자료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 ④ 시민회의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결과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시민회의 회원의 선정과 사임

제14조(시민회의 회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위원장은 시민회의 회원후보예정자명부가 헌법개정안에 대한 전체 국민의 일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작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회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주민등록자료는 무작위로 추출되어야 하고, 회원후보예정자의 성별 및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로 같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회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제15조(회원후보자의 결정 및 통지) ① 위원장은 회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회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되 성별, 연령, 지역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회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국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회원후보자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회원의 결정) ① 선정기일에서는 회원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의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정기일의 속행을 위하여 새로운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기일에 출석한 회원후보자에 대하여 새로운 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출석통지서의 송달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위원장은 선정기일에 출석한 회원후보자의 수락 의사를 물어 보고 회원을 결정한다.

⑤ 선정기일의 진행 및 회원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회원후보자의 사임) 제15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회원후보자는 선정기일 또는 그 전에 사임할 수 있다.

제18조(회원의 사임)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임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회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회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는 회원이 직접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19조(결원에 대한 충원) ① 시민회의는 제18조에 따라 결원된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의결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회원후보자 중에서 회원을 충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회원의 충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위원 및 회원의 권익보장

제20조(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 및 제13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직무수행 기간을 결석으로 처

리하거나 그 직무를 이유로 불리하게 채우하지 못한다.

제21조(직장 보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 및 제13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직무를 이유로 불리하게 채우하지 못한다.

제22조(수당 및 실비변상) ① 제10조제1항 각 호 및 제13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 각 호 및 제13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헌법개정안 발의

제23조(헌법개정안 발의) 국회는 제6조에 따라 확정된 헌법개정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24조(공고) 제23조에 따라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장 국민투표

제26조(국민투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9장 공포

제27조(확정 및 공포) 헌법개정안이 제26조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헌법개정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백년포럼

2017 백년포럼 시즌 1_1st